

韓國과 中國 衰冕制度와 實際

충청전문대학 의상디자인과
교수 김명숙

目 次

I. 서 론	1. 明代 衰冕 制度의 變遷
II. 朝鮮시대 衰冕제도와 실제	2. 중국 곤면의 실제와 규정과의 비교
1. 朝鮮 前期 衰冕제도	
2. 朝鮮 後期 衰冕제도	IV. 결 론
3. 조선시대 곤면의 실제와 규정의 비교	참고문헌
III. 明代 衰冕制度와 實際	ABSTRACT

I. 서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衰冕에 관해 연구한 것으로서 특히 현존하는 實物이 당시의 制度에 맞게 제작되었는지를 파악하는데에 그 주안점을 두었다. 衰冕이란 衣(衰服), 衫, 中單, 蔽膝 등의 衰服諸具와 冕旒冠을 포함하는 一襲의 服飾으로서 일찍부터 한국과 중국의 황제 및 왕 등, 통치자들의 祭禮와 嘉禮, 葬禮 등의 큰 행사때에 마련되는 大禮服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高句麗 璧畫나 『三國遺事』에서 衰冕에 관한 사항이 나타나 있어, 삼국시대에 이미 衰冕이 착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중국의 경우 『後漢書』 이후 與服志에 그 제도가 실려 있다. 본 연구는 실물자료가 남아 있는 朝鮮과 明의 衰冕에 관하여 주로 살펴 볼 것이며, 衰冕제도의 변천과 아울러 현존하는 衰冕 실물과 사진, 초상화 등에 보이는 衰冕의 색과 형태를 살펴보고, 곤면이 규정에 맞게 제작되었는지를 놓침으로 추적하고자 한다.

조선의 곤면제도는 『국조오례의서례』와 『국조상례보편』, 그리고 역대 國葬 및 禮葬都監儀軌에 보이는 圖說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실물 자료로는 翼宗 孝明大王 御眞의 곤면과 高宗의 것으로 전해지는 곤복제구, 그리고 純宗皇帝의 곤면착용 사진, 英王 및 英王妃의 곤복관련 제구를 이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明의 衰冕 제도는 『大明會典』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며, 실물 자료로는 神宗의 陵에서 출토된 蔽衣 및 補空服飾으로 쓰인 衰冕을 이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결국 조선과 明의 衰冕이 實際로 규정과 같고 다른 점을 밝혀냄으로서 곤면이라는 동아시아 복식사의 한 품목의 전개 양태, 토착화에 관한 시각을 제시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다.

II. 조선시대 곤면제도와 실제

1. 朝鮮 前期 衰冕制度

* 이 논문은 1995학년도 충청전문대학 교내 연구비의 지원에 의한 것임.

『國朝五禮儀序例』, 吉禮, 祭服圖說에는 조선시대 왕의 9장복과 왕세자의 7장복 제도의 설명을 그림과 함께 제시하고 있어 당시의 곤면제도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國朝五禮儀序例』, 凶禮, 服玩圖說에는 조선시대 왕과 세자의 장례 때에 마련되는 服玩用 면복에 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어, 면복이 제복 뿐 아니라 복완용으로도 마련되었으며, 용도는 달라도 그 기본적인體制가 같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조선전기의 국조오례의서례 면복제도는 영조 말에 가서 재정비되고 부분적으로 개정되었음이 역대『국장도감의궤』복완도설과 1758년에 간행된 『國朝喪禮補編』圖說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앞으로 볼 바이지만 조선 전기의 제도는 선조, 인조대까지는 지켜졌으나, 17세기 후반부터 점차 부분적으로 달라졌고, 영조 때에 이르러 새로운 제도로 정비되었다.

1) 『國朝五禮儀序例』祭服圖說의 衫冕制度

(1) 王 冕服(九旒冕 九章服)

『國朝五禮儀序例』, 吉禮, 祭服圖說에 보이는 王의 冕服制度는 다음과 같다.

圭는 青玉으로 만들며, 길이는 9寸이다. 冕版의 너비는 8寸, 길이는 1尺 6寸이며, 앞은 등글고, 뒤는 모겼으며, 겉은 玄色, 안은 繡色으로 하고 繪으로 만든다. 앞높이는 8寸 5分, 뒷높이는 9寸 5分이며, 金飾한다. 9줄이며, 줄마다 9玉 五采를 하는데, 우선 朱色이고 다음에 白, 蒼, 黃, 黑순으로 한다. 줄의 길이는 9寸이며, 앞뒤 18줄이다. 金簪을 꽂고, 冕旒에 玄紱을 달고, 玉璜을 느리워서 귀를 가리우고 紫組 끈을 양 옆에 느리워 턱 밑에서 매고 남는 것은 드리운다. 끈 하나를 원 쪽 비녀에 매어 턱 밑을 둘려 오른 쪽으로 올라가 비녀에 걸어 매고, 남는 끈은 도리워 장식으로 삼는다. 衣는 繪으로 만들고 玄色이며(玄色이란 青黑色에 약간 赤色을 염하는 色), 龍, 山, 火, 華蟲, 宗彝 5章文을 그린다. (그림은 陽事이므로 衣에 하고, 繡는 陰功이라 衣에 놓는다.) 衣은 繪으로 만들고 繡色(세 번 염색한 緑色)이다. 7폭으로 하되 앞 뒤를 따로

하고, 앞 3폭 뒤 4폭이고, 매 폭의 양 옆 각 1寸씩 퀘매 이를 削幅이라 하고, 허리에는 무수한 주름을 잡는다. 衣 옆의 紱을 紱이라 하고, 아랫단의 紱을 紱이라 한다. 紱과 紱의 나비는 각 1寸반으로, 안팎을 합하여 3寸이다. 藻, 粉米, 簪, 簪의 4章文을 수 놓는다. 大帶는 緋色과 白色 繪을 합해 퀘맨다. 中單은 白色 繪으로 만들며, 青色으로 領, 裳, 横, 裳을 두르고, 簪文 11개를 깃에 그린다. 佩는 둘이다. 위에 衡을 두고 그 위에 金鉤를 단다. 重衡의 중간에 堀와 瑙를 놓는다. 아래에 雙璜을 두고 衡牙를 雙璜사이에 둔다. 雙滴을 충아와 雙璜사이에 두고, 끈에는 琥珀珠를 편다. 衡, 堀, 瑙, 雙璜, 衡牙, 滴子는 모두 玉으로 한다. 紱은 紱花錦으로 만들며, 雙金環을 단다. 方心曲領은 白羅로 만들며, 양 옆에 끈을 다는데, 왼쪽은 緑色, 오른쪽은 紅色으로 한다. 蔽膝은 繪으로 만들며, 繡色으로 한다. 위에는 紱, 아래는 紱이라 하는 선을 두른다. 위에서 5寸 떨어진 곳에 藻, 粉米, 簪, 簪을 수 놓는다. 簪은 緋段으로 걸을, 紱綱로 안을 만든다. 紱은 緋段으로 걸을, 白繒으로 안을 만든다.

(2) 王世子 冕服(八旒冕 七章服)

『國朝五禮儀序例』吉禮 祭服圖說의 王世子 곤면은 8旒면이고, 每旒 8玉 三采로, 우선 朱, 다음이 白, 蒼의 순으로 달며, 衣에 3章을 그리는 것이 왕의 것과 다르고 나머지는 왕의 것과 같다.

2) 『國朝五禮儀序例』服玩圖說의 衫冕제도

服玩이란 國葬 및 禮葬時에 마련하여 明器 등과 함께 副葬하는 衣服類로서, 평소에 착용하던 옷을 그대로 쓰며, 새로 만들 경우에는 平時 옷의 절반 크기로 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服玩制度에 관한 기록은 『高麗史』에서 처음 보이며, 朝鮮時代『國朝五禮儀序例』복완도설에, “服玩의 體制는 平時의 半으로 하며, 그 圖形이 祭服圖說에 있다.”고 하였다. 『國朝五禮儀序例』 服玩圖說과 祭服圖說을 비교해 보면, 기본 체제는 서로 같으나, 服玩用衣는 青色임에 반해, 祭服은 玄色이고, 祭服用大帶는 “緋白繪合以縫之”라고 한 것이, 服玩圖說에

서는 “表裏白羅紅綠緣”이라 하였으며, 祭服에는 方心曲領이 포함되어 있으나, 服玩用에는 없는 것이 차이점이다.

2. 조선 후기 균면제도

1) 『國朝喪禮補編』의 衰冕제도

朝鮮初期의 衰冕制度는 英祖末에 그 규정이 일부 바뀌면서 재정비 되는데, 英祖 34년(1758)에 폐낸 『國朝喪禮補編』 대례면복도설과 복완도설에 그 내용이 나타나 있다. 이로서 곤면은 대례용으로도 사용됨을 알 수 있고,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 기본 體制는 다른 용도의 것과 같으나, 보다 간소하게 마련함을 알 수 있다. 복완용 면복은 平時 王이 쓰던 것을 使用하며, 새로 만들 때는 常制의 1/5크기로 한다고 하여 그 크기를 국조오례의 서례 규정보다 축소시킴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국조 상례보편의 면복제도를 품목별로 알아본다.

冕版의 너비는 8寸, 깊이 1尺6寸으로 하고 前圓後方으로 하며, 版의 걸은 冑緞으로 하고, 안은 紅廣織으로 한다. 體의 높이는 앞 8寸5分, 뒤는 9寸5分으로 하며, 早毛羅로 짠다. 版 밑의 玉樑과 양 옆의 玉은 唐紛으로 칠하고, 前後의 9旒는 五色紬로 造成하는데, 每旒 五采의 9玉을 끼며 그 순서는 朱, 白, 蒼, 黃, 黑이다. 金錢紙를 冕 좌우에 붙이고, 紅絲로 끈(纓, 多會)을 한다. (小喪일 때는 8旒로 하며, 每旒마다 三采의 8玉을 끼며, 朱, 白, 蒼 순으로 한다. 玉樑, 玉瑱은 緑紛으로 그린다.)고 하였다. 服玩도설에서는 “桐板, 玉樑, 金飾, 金簪, 垂旒玉을 갖춘다”고 하여, 대례복 면복을 보다 간소하게 만들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圭는 (圭이 하赤鳥까지는 王이 평상시에 쓰던 것을 사용한다.) 白玉으로 하는데 길이 9寸, 너비 3寸으로 하고 売 쪽한 머리(劍首)는 1寸 5分으로 한다(小喪일 때는 青玉으로 하며, 길이는 7寸으로 한다)고 하였다. 服玩도설에서는 “평상시에 쓰던 碧玉圭를 사용하며(世子는 青圭), 주머니는 紅熟綃로 걸과 안을 만든다”고 하여, 대례용과 복완용 규의 색이 다름

을 알 수 있다. 衣는 鵝青熟綃로 하며, 龍, 山, 火, 華蟲, 宗彝 5章을 그린다(小喪일 때는 火, 華蟲, 宗彝 3章을 그림). 웃, 소매에는 모두 선을 두른다. 裳은 紅熟綃로 하고, 前三幅, 後四幅으로 한다. 前三幅의 左右에 藻, 粉米, 裳, 故의 4章을 수놓는다. 裳의 옆에는 級, 밑에는 緺이라는 선을 두르며, 허리에 많은 주름을 잡는다. 따로 紅熟綃를 前, 後幅에 대어 겹박고, 그 양 끝에 끈을 단다고 하였다. 大帶의 걸은 白熟綃로, 腰는 紅熟綃로 선을 두르고, 紳(아래로 내려오는 부분)은 緑熟綃 선을 끈다. 양 옆에 青組를 달아 맨다고 하였다. 中單은 白熟綃로 하고, 領, 裳, 横, 褶에는 鵝青熟綃를 끼는다(絳紗袍의 單衣와 마찬가지로 故을 그려 넣는다)고 하였다. 緺는 걸과 안, 그리고 網垂를 페와 같게 한다. 金環을 다는 대신, 泥金으로 金環을 그린다고 하였다. 그런데 服玩도설에서는 平時 처럼 金環을 단다고 하였다. 方心曲領은 白熟綃로 하며, 양 옆에 끈을 단다(왼쪽은 綠色, 오른쪽은 紅色). 것의 오른편 어깨 달는 곳에 단추를 단다고 하였다. 韜은 蔽膝을 말하며, 紅熟綃로 걸과 안을 한다. 앞면에 五色絲를 엮어 三面의 둘레를 돌아가며 끼운다. 위에서 5寸 내려온 곳에 藻, 粉米, 裳, 故 4章을 두 줄로 수놓는다고 하였다. 紅襪은 걸을 白熟綃, 안을 紅紵布로 한다. 뒷면 위 1寸 남짓은 박지 않고, 양 옆에 紅熟綃로 만든 끈을 단다고 하였다. 赤鳥은 걸을 紅熟綃, 안을 白熟綃로 하고, 純과 술(綏兒 卽 蘇兀)은 鵝青眞絲로 한다. 左右와 後의 純 옆에 白綃로 만든 작은 고리를 단다. 紅綃로 끈을 만들어 작은 고리에 끼어 맨다고 하였다. 佩는 (이는 小斂條에 기록됨) 緞으로 만들어며, 걸은 赤, 青, 玄, 緺, 緑의 五色으로 交織하고, 안은 紅熟綃로 한다. 五色絲의 나머지를 엮어 網垂로 내리운다. 패옥 및 銀鉤는 달지 않고, 唐紛으로 패를, 泥金으로 鉤를 그린다(大斂用 佩制도 같다)고 하였다. 服玩用 佩는 平時에 사용하던 것으로 한다고 하였다.

2) 儀軌 服玩圖說의 곤면제도

복완용 곤면의 실제를 보여주는 服玩圖說은 奎章閣 所藏 歷代『國葬 및 禮葬都監儀軌』에서 찾을 수 있다. 의궤 복완도설을 통해 본 곤면의 품목별, 시대별 변천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圭

宜祖國葬이후 顯宗國葬까지는 王과 王世子 모두 青玉圭로 기록되었으며, 肅宗國葬이후 孝章世子禮葬까지는, 王은 平時의 白玉圭로, 王世子는 平時의 白玉圭로 기록되었다. 英祖國葬이후 哲宗國葬까지는 王은 平時의 碧玉圭로, 王世子는 平時의 青玉圭로 하였고, 주머니는 王의 것은 안팎 모두 紅熟綃로 하고, 王世子의 것은 걸은 靑苧絲로, 안은 縕綃로 하였다.

(2) 冕

宣祖國葬이후 孝宗國葬까지는 冠을 早毛羅로 싸고, 覆板의 걸은 早羅로, 안은 紅羅로 한다. 전후 각 9류이고 각 류는 9玉이며, 5色珠를 교대로 꾼다고 하였다. 肅宗이후 景宗國葬때는 白玉樑, 五色珠를 평상시 쓰던 것으로 사용한다고 하였고, 孝章世子禮葬때도 평상시 사용하던 青玉樑과 青色珠를 쓴다고 하였다. 英祖國葬부터 冕은 “具桐版, 玉樑, 金飾, 金簪과 垂旒, 玉瑱은 常制와 같다”고 기록하였다.

(3) 衣

宣祖國葬이후 服玩用衣의 재료는 青熟綃 9尺, 白熟綃 4尺 8寸으로 되어 있다. 英祖國葬부터는 “衣는 鴟青熟綃로 하고, 龍, 山, 火, 華蟲, 宗彝 5章을 그린다. 소매에는 모두 선을 두른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복완용 면복의 衣色은 英祖이전에는 青色, 英祖國葬이후에는 鴟青色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영조국葬부터는 衣를 짧게 그려 衣의 章文이 보이도록 한 것에 주목된다.

(4) 裳

儀軌 服玩圖를 통해서 본 衣의 형태는 4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는 선조 國葬이후 인조國葬까지이며, 국조오례의서례 衣과 같이 전 3폭, 후 4폭이 갈라져 있고, 양 옆과 위에 끈이 달린 형태이다. 2단계는 孝章世子禮葬이후 顯宗國葬까지로, 상의

형태가 변화되어, 後4폭을 밑에 놓고, 그 위로 前3폭을 위 양 옆에 놓고 한 허리에 넣어 박은 것과 같은 형태이다. 제 3단계는 肅宗國葬 이후 孝章世子예장까지인데 위로 매다는 끈이 없어지며, 앞 3폭의 章文이 양 옆에 위치하여 좌우가 대칭임을 볼 수 있다. 이 3단계까지 衣의 바탕색은 紅色이고, 끈과 말기허리는 青色으로 채색되어 있다. 끝으로 4단계는 英祖國葬(1776) 이후 哲宗國葬(1864) 때 까지이고 전체를 紅熟綃로 하며, 전 3폭의 좌우 폭에 4章文을 수 놓고, 허리 전체에 많은 주름을 잡았다. 한편 衣의 장문 색을 알 수 없었으나 다행하게도 의궤의 복완도를 통해 알 수 있었으니, 藻는 緑색, 粉米는 흰바탕에 흑색점, 繡는 청색과 흰색, 繪은 흑색이었다. 폐슬의 장문색도 이와같다.

(5) 大帶

宣祖國葬이후 孝章世子禮葬까지의 服玩도설에 나타난 대대의材料는 모두 白羅長三尺半骨, 多紅段五寸으로 기록되어 있고, 帶는 紅色, 紳과 紝는 白色으로 채색되어 있다. 그러나 英祖國葬부터는 “걸은 自然綃로, 안은 紅熟綃로 하며, 허리는 紅熟綃로 선을 두르고, 紳에는 緑熟綃로 선을 댄다. 양 끝에 青組를 단다.”고 규정을 마구고 圖에는 대를 놓게 채색하고 있다.

(6) 中單

宣祖國葬부터 孝宗國葬까지의 기록에 보면, 중단의 재료를 白綃二十尺, 青綃三尺三寸이라 하였다. 英祖國葬부터는 白熟綃로 하고, 鴟青熟綃로 짓, 소매끝, 선, 도련에 선을 두르고 繡文을 11개 (좌우 각5, 뒤1)를 泥金으로 그린다고 하였다.

(7) 佩玉

『宣祖國葬都監儀軌』의 佩玉圖를 보면, 形態가 『國朝五禮儀序例』와 같고 다만 채색되어 있지 않다. 孝宗國葬부터 上部는 緑色, 下部는 紅色으로 칠해져 있고 이는 효장세자예장까지 같다. 肅宗國葬때는 평소 쓰던 것 그대로 쓴다고 하였다. 英祖國葬부터는 걸감을 五色交織한 비단으로, 안감은 紅熟綃를 대며, 五色絲를 엮어 網垂로 늘어뜨린

다”고 하였다.

(8) 綏

宣祖國葬부터 효정세자예장까지의 수 그림은 『國朝五禮儀序例』와 같고, 材料는 紅綃 2尺이다. 顯宗國葬부터는 綏의 上部를 紅色, 下部를 綠色으로 채색하고 있다. 英祖國葬부터는 “겉과 안감, 그리고 網垂는 佩의 制度와 같고, 金環을 평상시와 같이 갖춘다.”고 하였다. 이로 볼 때, 영조國葬부터는 綏도 佩처럼 五色交織한 비단을 겉감으로, 紅熟綃로 안감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9) 方心出領

방심곡령은 『顯宗國葬都監儀軌』에는 ‘方心’으로 되어있고, 그림은 흰색, 재료도 흰색이다. 그러나 英祖國葬부터는 “方心出領”으로 기록되며, “白熟綃로 만들며, 왼쪽에는 綠色, 오른쪽에는 紅色 끈을 달고, 깃의 오른쪽 어깨 닿는 부분에 단추를 단다.”고 해서 여밈의 위치가 달라졌다.

(10) 蔽膝

宣祖國葬이후 孝章世子禮葬까지의 儀軌에 기록된 材料는 紅綃 1尺이다. 그러나 그림을 보면 孝宗國葬부터는 鑄술의 鉤 대신 양 옆에 青色 끈을 달아 착용법이 달라지고 있다. 이처럼 끈으로 매는 鑄술은 『英祖國葬都監儀軌』부터 보이지 않게 된다. 새로운 鑄술 제도는 “겉, 안감을 紅熟綃로 하고 앞면에 五色絲를 엮어 三面의 둘레를 돌아가며 대고 꿰맨다. 위에서 5寸 아래로 내려와 蕗, 粉米, 薦, 獻 4章을 2줄로 수 놓는다.”는 것이니, 이는 『國朝喪禮補編』도설과 일치한다. 章文의 色은 裳과 같다.

(11) 紅襪

宣祖부터 孝宗國葬까지의 襪의 재료는 紅綃 2尺이고, 形態는 『國朝五禮儀序例』와 같으며, 바탕색은 紅色, 끈은 白色으로 襪의 축면에 달려 있다. 英祖國葬부터는 “겉은 紅熟綃, 안은 紅저포로 만들며, 後面의 위 끝을 1寸정도 박고, 그 양쪽에 紅熟綃로 만든 끈을 단다”고 하여 끈의 위치가 달라졌다. 이는 『國朝喪禮補編』의 내용과 같으며, 요지음 버선처럼 左右 合縫되는 형태이며, 신기 편

하게 뒤를 1寸정도 트고 끈을 뒤에 단다는 점, 그리고 끈이 紅色인 점 등이 달라진 점이라 하겠다.

(12) 赤舄

宣祖國葬이래로 석의 形態는 『國朝五禮儀序例』와 같으며, 바탕색은 紅色, 끈과 바닥옆의 솔장식은 青色이다. 『英祖國葬都監儀軌』부터는 “겉은 紅熟綃, 안은 白熟綃로 하고, 純과 술(綏兒, 蘇兀)은 鴉青眞絲로 한다. 그리고 좌우와 뒤에 白綃로 만든 작은 고리를 달고, 紅綃로 만든 끈을 매도록 한다”고 바뀌었다.

3. 조선시대 곤면의 실제와 규정의 비교

1) 翼宗 敦文顯武仁懿 孝明大王 御眞의 袞冕(8 류면 7장복)

현존하는 곤면 착용 여진은 효명대왕의 어진(1826)이 유일한 바, 이는 효정세자의 18세때의 것으로, 왕세자의 8류면 7장복을 착용하고 있다. 왕세자 袞冕의 실물자료가 없으므로 어진을 통하여 조선 후기 왕세자 袞冕의 실제와 『國朝喪禮補編』의 규정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1) 壇

『國朝喪禮補編』도설에서는 青正 7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御眞의 규는 青正으로 보여지므로 규정에 맞다.

(2) 冕

① 前圓後方 : 면판이 ‘後方’임은 알 수 있으나 전반부가 燒失되어 ‘前圓’인지 확인할 수 없다. ② 玄表朱裏 : 冕版(平天版)위는 검게 칠해져 있어, 玄表 규정에 맞는다. ③ 前面後仰 : 『國朝喪禮補編』에 體의 높이는 앞 8寸5分, 뒤 9寸5分으로 앞으로 숙여지도록 했는데 이 규정이 지켜졌다. ④ 金飾과 金簪 : 體의 축면에 가로, 세로 1줄씩을 金飾하고, 金簪을 끊았으니 규정에 맞는다. ⑤ 簪 : 王世子 冕은 8류이고 3彩의 8玉을 朱, 白, 蒼의 순으로 펜다고 하였다. 어진에 보면 맨 위의 玉은 冕版에 가려져 보이지 않고, 나머지 7玉이 白, 蒼, 朱, 白, 蒼, 朱, 蒼의 순서여서, 마지막 玉의 色이 제도

와 맞지 않는다.

(3) 衣

鵝青色이며, 소매 뒤에 火2, 華蟲2, 宗彝3, 어깨에 火1의 3章文이 그려져 규정에 잘 맞는다.

(4) 袂

裳은 衣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이로서 袂을 衣 속에 입었음을 알 수 있다.

(5) 大帶

大帶의 靑組부분만 보이고, 腰와 紳부분은 그림에서 볼 수 없어 규정에 맞는지 알 수 없다. 組는 청색이므로 규정에 맞는다.

(6) 佩玉

佩玉 받침은 赤, 靑, 玄, 繻, 綠色의 순서로 짠 五色綱垂와 더불어 2개의 玉環이 보이는데, 이는 규정에 맞는다.

(7) 方心曲領

方心曲領의 曲領부분과 좌측의 緑纓부분만이 보인다. 이는 '左綠右紅'규정에 잘 맞는 것이다.

(8) 蔽膝

폐술은 좌축하단의 敦文과 오색사로 짠 紈의 일부만이 보인다. 敦文은 검게 채색되어 역대 의궤의 치색 복원도와 같고, 紈은 오색사로 짰으니 이 역시 규정과 맞는다.

(9) 穪

紅色이니 규정에 맞는다.

(10) 烏

석 역시 紅色으로, 옆에 흰색고리를 달아 끈을 끊어 앞 쪽에서 리본처럼 매었고, 바닥에 청색 술을 달았다. 이로 볼 때 바탕, 술 그리고 고리의 색이 모두 규정에 맞는다.

이상 어진을 통하여 조선시대 왕세자의 袞冕의 실체를 살펴 본 결과 어진의 袞冕은 대체로 『국조 상례보편』규정에 맞게 제작되었고, 다만 冕旒의 玉의 色만이 규정과 맞지 않았다.

2) 傳 高宗의 袞服諸具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곤면은 高宗의 것으로 전해지는 곤복과 중단, 그리고 고종이 사용했던 폐

옥이 있다. 이를 조선 후기 『국조상례보편』 제도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衰服은 鵝青色이고, 양 어깨에 龍文, 등에는 山文, 소매 뒤에는 火, 華蟲, 宗彝文이 그려져 있어 5章이니 규정에 맞는다. 中單은 바탕이 靑色이고, 領, 標, 襪, 裳에 黑色 선을 둘러, 바탕과 선의 색 모두 규정과 다르다. 깃에 敦文을 9개 둔 것은 규정에 맞는다. 고종이 폐용했다는 폐옥(『文化財大觀』, 重要民俗資料編 참조)은 옥의 배치가 四段이고, 옥판의 수는 모두 12개로 『國朝喪禮補編』의 규정과 같다. 그러나 佩玉 받침이 赤, 綠, 靑, 白의 4색으로 짜여져 있어 赤, 靑, 玄, 繸, 綠의 5색 규정에 맞지 않는다.

3) 純宗皇帝의 곤면(12류면 12장복)

순종의 12류면 12장복 착용 사진은 1927년에 간행된 『純宗實紀』 附「名臣史傳」에 실려있는 것이다. 흑백사진으로正面만 보여 충분하지는 않으나 가능한 대로 품목별로 『대한예전』(1897년제정)의 12장복 규정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冕은 12류면으로 규정에 맞는다. 衣의 소매 아래부분에 華蟲文 셋이 있고, 윗 부분에 龍文이 보여, 이 곤복이 6章衣 규정에 맞음을 알 수 있다. 다만 衣가 발목길이로 상의 장문이 보이지 않으나 "衣를 짧게 하여 裳의 章文이 보이도록 한다"는 『대한예전』의 규정에는 맞지 않는다. 壽는 규정에 의하면 위끝이 뾰족해야 하는데, 사진에 보이는 규는 이 규정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方心曲領을 착용하였는데, 이는 대한예전 규정에는 없는 품목이다. 허리에는 혁대와 대대, 폐술을 둘렀으며 양 옆에는 폐옥을 느리우고 穪과 烏을 신었으나, 색을 알 수 없어 규정과 맞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4) 英王 및 英王妃의 袞服 關聯 諸具

이들 품목은 1922년 英王 夫妻가 순종황제를謁見할 때에 착용했던 것들이며, 곤면과 관련된 품목들이므로 곤복제도를 살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품목별 설명은 『朝鮮朝末期 王室服飾』의 기록

을 참조하였다.

(1) 大帶

영왕비의 翟衣에 착용했던 것으로서 後綬가 함께 부착되어 있다. 『國朝喪禮補編』의 규정에는 대대와 후수가 별도 품목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함께 부착되고 있다. 대대의 걸은 白色 문단이고 안은 紅絹로 되었고, 걸에는 玉色선을 둘렀다. 양옆의 青紐는 남색무문견으로 만들고 끝에 남색출을 달아 앞으로 매게 하였다. 「國朝喪禮補編」 규정과 비교할 때 걸과 안의 색은 같으나 선(緣)의 색이 규정과 다르다.

(2) 後垂

영왕비의 후수로서, 대대에 부착된 것이다. 縱絲는 적, 녹, 청, 백색의 순서로 짰고, 橫絲는 백, 남, 적, 녹의 순서로 짠 색동견직물이다. 하단에는 縱絲의 색인 4色으로 짠 78cm 정도의 망수를 연결하고 그 밑에 16cm 길이의 술을 늘였고 상부에 금환들을 달았다. 「國朝喪禮補編」의 규정과 비교하면 5색이 아닌 4색으로 짠 점이 다르다. 다만 망수와 술을 늘이고, 금환을 2개 단 점은 규정에 맞는다.

(3) 佩玉

「朝鮮朝 末期 王室 服飾」에서는 No.48의 패옥이 왕비의 것이라 하였으나(p.196), No.47의 패옥 함 위에 ‘冕服佩玉’이라 써여 있는 것(p.56)으로 보아 이 패옥은 英王이 면복착용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설명(pp.195~196)을 보면 “폐옥은 흥, 백, 남, 흑, 녹의 색동견직물의 小綬 위에 부착되어 있다. 망수의 이면은 홍색운문사이다. 맨 윗 부분에 도금된 금속으로 된 고리가 부착되어 있어 띠에 걸게 되어 있다. 각 옥장식은 무늬가 없는 빈 옥이다. 본 패옥은 조사 당시 대(袋)에 들어있지 않은 상태로 보관되어 있었던 점으로 보아, 폐대(佩袋) 없이 사용했을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하였다. 살펴본 마에 의하면 패옥 받침의 색 배열은 우측에서 좌로 적, 청, 현, 표, 흑의 5색 순으로 9단의 색이 배열되어 있고, 위로부터 아래로 역시 같은 색 순으로 선을 넣어 바탕을 격자문으로 구분하고 있다. 『國朝喪禮補編』의 패옥규정에, ‘폐의

걸을 赤, 靑, 玄, 繡, 緑의 五色交織으로 안은 紅熟 紡로 한다.’고 하여, 이 유물의 패옥이 규정에 맞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망수와 술의 색은 위의 바탕색과 같으며, 옥의 형태와 배열과 수, 그리고 고리를 단 점등은 모두 『國朝喪禮補編』규정과 같다.

(4) 玉

영왕의 규는 白玉과 碧玉 두 점이 있다. 규의 아래 부분은 붉은 花紋綬으로 싸고, 다시 붉은 無文綬 주머니에 넣어 나무 상자안에 넣게 되어 있어 『國朝喪禮補編』의 규정과 일치한다.

(5) 玉革帶

옥대는 홍색운문단으로 걸을 싸고 다섯줄의 金線을 加飾하였으며 용문을 투조한 4각형과 菊枝形의 옥판을 대었다. 안쪽 후면에는 옥색문단을 대어 홍색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옥판은 정면중앙에 長方形 1개가 있고, 그 양옆에 長條形 1개씩, 그 양옆으로 여지형 옥판 3개씩, 그 양옆에 한면이 원호형인 옥대 뒤면으로는 長方形 옥판 1개씩이 있으며, 옥대 뒤면으로는 長方形 옥판 5개가 불어 있다(p.188). 이 옥혁대는 영왕이 착용하였던 유일한 것인데, 『國朝喪禮補編』의 곤면 규정에는 없는 품목이다. 「익종 효명대왕 어진」에도 옥혁대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순종의 12장복 착용 사진에는 옥혁대가 보여 대한제국에 들어와서 혁대를 곤면제구에 포함 시킨것을 알 수 있다.

이상 살펴본 바, 영왕및 영왕비의 곤복관련제구는 시기적으로 보아서는 대한제국기에 제작, 착용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한예전』의 규정과는 다른 점이 많다. 오히려 부분적으로는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국조상례보편』의 규정에 따른 듯하다. 예컨대 패옥은 『國朝喪禮補編』규정과 같고, 後綬는 5색이 아닌 4색으로 되었으나 기본刑制는 제도와 같고, 대대 역시 기본형제는 규정과 같으나, 다만 緣의 색이 다를 뿐이다.

III. 明代 衰冕制度와 實際

1. 明代 衰冕 制度의 變遷

명의 衫冕제도는 『大明會典』, 『明史』, 『大明集禮』 등에 나타나 있으며, 본 고에서는 비교적 규정 변천이 상세하게 나타난 『大明會典』의 衫冕 제도를 살펴 보고자 한다. 『大明會典』, 卷六十, 禮部. 冠服一, 皇帝 冕服條에 의하면 衫冕규정은 洪武16年(1383)에 마련된 이후 洪武26年(1393), 永樂3年(1405)년, 嘉靖8年(1529) 등 세 차례에 걸쳐 개정, 보완된 바, 그 품목별 변천 과정을 다음에서 살펴 보고자 한다.

(1) 冕

홍무 16년 규정에 冕은 ①앞이 등글고 뒤는 모나며, ②곁은 검고 안은 붉으며, ③앞뒤 열두줄을 느리운다. ④각 줄마다 五色 구슬을 열두개 달며 ⑤五色綾 12就를 달며 ⑥하는 서로 1寸 떨어지게 한다. ⑦붉은 실로, 끈을 달며 ⑧紺綾으로 充耳를 삼고 ⑨玉簪導를 단다고 하였다. 홍무 26년의 冕 규정을 보면 앞의 ⑦⑧⑨내용은 빠져 있고, ⑩ ⑪ ⑫의 내용은 앞과 같으며, ⑬과 ⑭은 繡色이 朱色으로, 紅色이 朱色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冕版의 칫수(너비 1尺2寸, 길이가 2尺4寸)가 부가 되어 있다. 영락 3년의 冕 규정을 보면 홍무 16년의 기록과 비교할 때 언급 순서는 다소 다르나 ⑦ ⑯(纏→朱), ⑧⑨⑩⑪의 기록이 그대로 있고 ⑬ ⑭의 기록이 빠져 있다. 그리고 冠은 검은 비단으로 하며, 桐版으로 하고 비단을 씌운다고 하였다. 五色의 구슬은 赤, 白, 靑, 黃, 黑色의 순서로 끼우고 玉珩을 관에 매달고, 끈을 궤는 부분에는 金장식을 하며 延 좌우에 紺綾充耳를 노리우되 黃玉으로 한다. 그리고 이에 玄紺과 白玉瑱을 매달고, 붉은 끈을 단다고 하여 내용을 추가했다. 가정 8년의 규정을 보면 ⑬⑭의 규정이 다음과 같이 바뀌고 있다. 즉 冕版의 너비를 2尺2寸으로 바꾸고, 冕旒의 玉色이 5采에 紅色과 綠色이 추가되어 7采로 되었다. 또한 充耳는 黃玉에서 青玉으로 바뀌었다.

(2) 圭

圭에 대한 기록은 홍무 26년제도에 처음 나타나며 길이가 2尺2寸이라고만 기록되어 있다. 영락 3년 규정에는 재료와 형태, 문양, 주머니에 대한 내

용을 추가하여, “재료는 玉으로 하며 위를 뾰족하게 하고, 山文을 1개 새긴다. 황색 비단으로 아랫 부분을 싸고, 별도로 주머니를 마련하며 금색 용 무늬를 넣는다”고 하였다. 가정 8년의 규정을 보면, 白玉으로 만들고, 황색 비단으로 쌌다고 했다.

(3) 衣(=衰)

홍무 16년 규정에 衣는 玄色으로 하며 日, 月, 星辰, 山, 龍, 華蟲의 6章을 짜 넣는다고 하였으며, 홍무 26년 규정도 이와 같다. 영락 3년의 규정을 보면 앞서와는 달리 8章으로 하여 火文과, 宗彝文을 추가하고, 日, 月, 龍文은 어깨에, 星辰, 山은 등에, 火, 華蟲, 宗彝文은 소매에 각 셋을 짜 넣는다고 하였고, 本色으로 領, 襪, 憞, 裳를 댄다고 하였다. 한편 가정 8년 규정에 章文을 다시 6장으로 바꾸었다. 日, 月文은 어깨에, 星, 山文은 등에, 龍과 華蟲文은 양 소매에 짜 넣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衣의 길이가 衫의 6장을 넘지 않는다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4) 衫

홍무 16년 제도의 衫는 黃色이고 이에 宗彝, 藻, 火, 粉米, 麻, 敛의 6장을 수놓는다고 하였다. 홍무 26년 규정에 상색은 繡色으로 바뀌고 6장을 짜 넣는다(繕)하여 色과 시문법이 변경되었다. 영락 3년에는 章文의 수가 4장으로 줄어 종이와 화문이 빠졌다. 앞 3폭, 뒤 4폭으로 앞뒤가 떨어져 있고 주름을 잡으며 本色의 純과 緺을 댄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가정 8년에는 衣이 다시 黃色으로 바뀌고 앞뒤 폭을 이어지게 하여 상의 형태가 달라졌다. 章文은 宗彝, 藻, 火를 두 줄, 그리고 米, 麻, 敛을 두 줄로 수놓게 하였다.

(5) 中單

홍무 16년에 정한 中單 규정은 “白羅로 만들며 깃에 文을 넣고 靑色의 緣과 선을 대는 것”이었다. 홍무 26년 규정은 단지 “素色 紗로 만든다”고 하였는데, 이는 영락 및 가정년에도 같게 되어 있다. 그리고 영락 3년에는 青領, 襪, 憞, 裳를 대고 깃에 敛文 열셋을 짜 넣는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가정 8년 규정에서도 같다.

(6) 蔽膝

홍무 16년 규정에 폐슬은 紫色에 따르고 龍, 山, 火 3章을 수 놓게 되어 있었다. 홍무 26년 규정에는 紅羅로 만들고 火, 龍, 山 3章을 짜 넣고, 폐슬의 위 너비는 1尺, 아래 너비는 2尺, 길이는 3尺으로 하였다. 영락 3년 규정에서는 紫色을 따르며 藻, 粉米, 蘭, 純 4장을 각 들씩 짜 넣고, 本色으로 緣을 대고 紗을 훠매어 달며, 위에 玉鉤 둘을 달도록 하였다. 가정 8년 규정에서는 紫色을 따르고 紗로 만들고, 위에는 龍文 1개를, 아래에는 火文 3개를 수놓고, 혁대에 걸도록 하였다. 폐슬도 紫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내용이 많이 바뀐 품목이다.

(7) 草帶

홍무 16년과 26년의 규정에는 명칭만 있고, 영락 3년 규정에는 명칭조차 빠져있다. 가정 8년 규정에는 “혁대의 앞은 玉으로 하되, 뒤에는 玉이 없고 佩綬를 달아 혁대를 가린다”고 하였다.

(8) 玉佩

홍무 16년 규정에는 명칭만 있고 홍무 26년에는 길이를 3尺3寸으로 규정하였다. 영락 3년에는 “옥 폐는 둘이며, 각각 玉, 玳1, 瑪1, 堀2, 衡牙1, 璞2개가 있고 瑪아래에는 玉花가, 玉花 아래에는 두개의 玉滴이 느리워져 있으며 玳은 雲龍文장식을 하고, 형 아래로는 描金하며, 다섯줄을 달아 玉珠를 편다. 위로 金鉤가 둘 달려있고, 두개의 小綬가 떨려 있는데, 이는 繡色 바탕에 黃, 白, 赤, 玄, 繩, 綠의 六彩로 한다”고 한다. 가정 8년 규정에는 설명이 없고 다만 佩綬를 혁대에 견다고 하였다.

(9) 大帶

홍무 16년 규정에는 “걸은 흰색 비단으로 안은 붉은 색으로 만든다”고 되어 있다. 홍무 26년 규정에는 “…양 변에 緣을 대는데 위는 붉은 비단, 아래는 녹색 비단으로 한다.”고 하여, 16년 규정에 緣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고 있다. 영락 3년의 규정에서는 紋가 素色임을 추가하였다. 가정 8년의 규정은 素表朱裏이고 上緣은 朱色, 下緣은 綠色으로 대되, 锦은 쓰지 않는다고 하였다.

(10) 大綬

홍무 16년 규정에는 적, 황, 흑, 백, 표, 톡의 6채로 만든다고 하였다. 홍무 26년 규정에는 혼색 바탕에 500수로 찬다고 되어 있다. 영락 3년 규정에는 바탕색이 繡色으로 바뀌고 있다. 가정 8년 정에는 혁대에 견다고 하였을 뿐이다.

(11) 小綬

홍무 16년에 규정에 “소수는 셋이고 색은 대수와 같다”고 하였으며, 사이에 玉環 셋을 넣는다고 하였다. 홍무 26년 규정도 이와 같으며 다른 점이라면 玉環 셋을 사이에 짜 넣는다는 언급이 들어가 있다는 점이다. 영락 3년 규정은 홍무년간 규정과 같으며, 玉環에 용문을 추가하였다. 가정 8년 제도에는 소수에 관한 언급이 없다.

(12) 機

홍무 16년 규정에 정한 機은 황색이었다가 홍무 26년 규정에는 朱色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다시 영락 3년에는 赤色으로, 가정 8년에는 朱色으로 바뀌었다.

(13) 烏

홍무 16년 규정에는 황색이었다가 홍무 26년 규정 이후에는 적색으로 바뀌었다. 영락 3년 규정에는 흑색으로 선을 두르고, 신코는 황색으로 장식한다고 했으며, 가정 8년 규정에는 황색으로 선을 두르고 검은 끈으로 매도록 하였다.

2. 중국 곤면의 실제와 규정과의 비교

1) 定陵 出土 明代 袋冕

정릉은 明十三陵의 하나로, 神宗 万曆帝(1573~1620在位)의陵이며 1985년에 발굴되어, 1990년에 보고서가 출판되었다. 룽에서 출토된 복식 가운데 곤면이 포함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들 곤면에 촛점을 맞추어 이들이 대명회전의 곤면제 도에 맞게 제작되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1) 冕

가정 8년에 개정된 황제의 冕 규정은 “圓匪烏紗帽”이며, 길이 2척 4촌, 너비 2척 2촌의 覆板이 있다. 玄表朱裏이고, 前圓後方이다. 전후에 각 7采玉

珠 12류를 다는데 黃, 赤, 青, 白, 黑, 紅, 綠色이다. 玉珩, 玉簪導에 朱纓이고, 青綸充耳를 玉珠 2개로 단다.”고 하였다. 정릉에서 출토된 神宗의 면은 2점이며, 이들은 모두 12류면이다. 그런데 冕하나는 4采玉 9珠를 달았고, 다른 한 冕은 5采玉 12珠이어서 가정 8년의 7采玉 12珠 규정과 비교해볼 때, 采의 수는 둘 다 맞지않고 주의 수는 한점은 맞고 다른 한 점은 맞지 않는다. 면판의 크기를 보면 w32면의 길이가 38.7cm, 너비가 19cm라 하여 길이 : 너비가 약 2 : 1이니, 이는 길이 : 너비가 약 1 : 1인 가정 8년 규정과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면판의 윗면은 黑素緞, 아랫면은 紅素緞을 불였다고 하므로 玄表朱裏의 규정에 맞고, 앞은 둑글게 뒤는 네모지게 만들었으니, 前圓後方 규정에도 맞으며, 玉珩, 朱纓 규정에 맞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한 冕에는 玉簪을, 다른 한 冕에는 金簪을 끼웠다고 하니, 이 규정이 반드시 지켜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 圭

가정 8년 정한 명 황제 면복의 규는 白玉으로 만들며, 길이가 1척 2촌이다. 위는 뾰족하게 한다. 위에 山 모양 넷을 새긴다.”고 하였다. 정릉 출토 옥규가운데 대명회전 제도에 그려진 것과 같은 형태의 규는 1점인데 위는 뾰족하고, 山文이四方에 있으므로 규정에 맞는다.

(3) 衣

가정 8년에 정한 황제 곤복은 “玄色이며, 日, 月은 그 지름을 5寸으로 하여 어깨에 배치한다. 星, 山은 등에 龍, 華蟲은 양 소매에 짜 넣으며, 그 길이가 衣의 6章을 가리지 않게 한다.”고 하였다. 정릉 출토 곤복은 모두 5점이며, 그 가운데 1점은 翡衣이다. 이들 5점은 기본 형태가 같으나, 1점은 黃色이고, 4점은 紅色이어서 玄色 규정에 맞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章文을 보면 日, 月, 星, 山, 龍, 華蟲의 6章文 외에 火, 宗彝, 藻, 米, 簪, 紛의 나머지 6章文까지도 넣어, 衣에 모두 12章文을 장식하여 6章衣의 규정에 맞지 않는다. 施文法을 살펴 보면 규정에 맞게 짜 넣기도 하였으나 수를 놓아 곤복

에 붙이기도 하여 제작법이 일정하지 않았다. 한 衣의 길이는 135cm정도로 하여, 규정대로 衣의 章文이 보이도록 배려하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이들 5점의 곤복가운데 2점에서 “万曆 四十五年…袞服” 혹은 “万曆 四十五年…袞服 日套收”란 銘書가 발견되어 이들 웃의 名稱을 확실시해 주고 있다. 그런데 출토곤복 다섯벌의 깃 형태가 대명회전 그림과 같은 직령이 아니고 단령인 점, 곤복에 규정의 면류관을 쓰지않고 익선관을 쓰고 있는 점 등이 주목되는데 이는 명 황제의 초상화에서도 발견된다. 이처럼 명대 황제 곤복은 곤면가운데 가장 중요한 품목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 색과 장문, 시문법 등이 제도와 달랐으며, 색을 玄色이 아닌 紅, 黃색 등으로 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깃의 형태가 대명회전의 곤복도와 달랐다.

(4) 衫

가정 8년에 정한 황제의 衫은 黃色이며 前3幅後4幅의 7폭이고 幀幕 형태이었다. 그리고 6 章文을 수 놓는 것인데 火, 宗彝, 藻 三章을 두 줄, 米, 簪, 紛 三章을 두 줄로 배치하는 것이었다. 한편 神宗의 衣은 黃色이고 7폭을 장막처럼 있고 있으며 앞폭 하단에 화, 종이, 조 두줄, 미, 보, 불 두 줄의 章文을 수 놓아 불었다. 이로 볼 때 衣의 색과 형태, 章文의 수와 종류는 규정에 맞는다. 또한 章文을 상의 아랫 부분에 배치하여 곤복을 입었을 때 상의 章文이 가려지지 않도록 한 점 역시 규정과 일치한다. 그리고 위의 내용을 통해 볼 때 衣은 곤복의 안에 입는 것임을 알 수 있다.

(5) 中單

가정 8년에 정한 황제 곤면의 중단 제도는 “素紗로 만들며, 청색으로 깃에 선을 대며, 紛文 13개를 짜 넣는다.”고 하였다. 출토 중단은 모두 다섯 벌이며, 각각 곤복 안에 끼워 넣어져 있었다. 한 벌은 翡衣로, 나머지 네 벌은 棺 안에서 발견되었다. 색은 黃色, 紅色 등 다양한 색으로 만들어져 있어, 素色 규정에 전혀 맞지 않았으며, 緣과 領은 청색으로 한다는 규정과는 달리 바탕색과 같게 되

어 있다. 그러나 깃에 離文이 13개 수 놓아져 있었으므로 규정에 맞다. 다섯별의 중단은 소매길이에 있어서 반소매로, 혹은 소매없이 만들어졌으며, 또한 깃의 형태가 交領으로, 혹은 圓領으로 제작되어, 명대 곤복의 중단이 일정한 형태로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말해 주고 있다.

(6) 蔽膝

가정 8년 규정의 폐슬은 “黃色이며 羅로 만들고 위에는 龍 하나, 아래에는 火 셋을 수 놓는다고 하였으며 혁대에 걸어 맨다”고 하였다. 神宗의 폐슬은 紅色이고 걸은 羅, 안은 紗로 만들고 위에는 龍, 아래는 火의 二章文을 수 놓고 있다. 색은 규정과 다르고, 재료와 章文은 맞게 제작되었다.

(7) 草帶

가정 8년의 규정은 “앞을 玉으로 만들고 뒤에는 玉을 쓰지 않는다. 폐와 수를 달아 이를 가린다”고 하였다. 神宗의 혁대는 霽衣인 곤복에 둘러져 있는 것을 포함해서 모두 12점이고 그 가운데 대명희전의 혁대와 같은 것은 6점이다. 그런데 뒤에도 7개의 옥판이 있어 규정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 佩玉

가정 8년 규정에는 폐옥 내용이 없다. 영락 3년 규정과 비교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규정과 같고 단지 雲龍文이 아닌 雲鳳文으로 장식한 점이 다르다.

(9) 大帶

가정 8년 제도를 보면 “素表朱裏이고 위에는 朱緣을 아래는 緑緣을 대고 錦으로 만들지 않는다”고 하였다. 神宗의 대대는 홍갈색 羅로 만들었고 같은 감으로 선을 두르고 있다. 이를 규정과 비교해 보면 素表규정과 달리 홍갈색이었으며 緑色도 녹색과 달리 홍색으로 하였다. 바탕은 羅이므로 이는 규정에 맞다.

(10) 大綬

가정 8년 제도에 대수에 관한 규정은 없다. 영락 3년 제도에는 “… 黃, 白, 赤, 玄, 繻, 綵의 6采로 하며, 色바탕으로 한다”고 하였다. 정릉 출토 대수는 홍혹색 바탕에 아래 부분을 홍색과 흑색을 교대로

로 넣고, 그 위에 黑, 緑, 黃, 白色의 菱形文을 짰다고 하였으니. 이로 보아 대수를 6采 규정과는 달리 5采로 짰음을 알 수 있다.

(11) 小綬

가정 8년 제도에 소수에 관한 기록은 없다. 영락 3년 규정에 보면, “소수는 셋이며, 대수와 색과 같다. 중간 부분에 옥환 셋을 달고, 용문을 짜 넣는다”고 하였다. 神宗의 대수 양 옆에 소수가 1개씩 달려 있는데, 색과 문양이 대수와 같다고 하여 대체로 규정에 맞으나 옥환은 달려 있지 않다.

(12) 穪

가정 8년 규정의 穪은 朱色이다. 神宗의 穪은 黃素綾으로 만들었으니 색이 제도와 다르다.

(13) 烏

가정 8년 규정은 赤烏이라고 하였는데 정릉에서는 烏이 없고, 곤복을 착용한 神宗의 발에는 鞠가 신겨져 규정과 다르다.

IV. 결 론

이상 우리나라와 중국의 衣冕제도의 변천을 알아보고 제도와 실물의 관계를 조선과 명을 중심으로比較해 보았다. 朝鮮前期의 王의 9류면 9장복제도와 王世子의 8류면 7장복제도는 「國朝五禮儀序例」에서 정립되었으며, 「국조상례보편」을 통해 볼 때 朝鮮後期 英祖末에 이르러 衣冕가운데 몇 가지 품목규정이 달라져 새로운 제도로 개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朝鮮時代 衣服제도의 變遷은 歷代 國葬都監儀軌 服玩圖說과 翼宗 孝明大王 御眞의 고찰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大韓帝國 성립이후에는 「대한예전」에 황제의 12류면 12장복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衣冕제도와 實際를 비교하여 본 결과, 몇 가지 규정과 다른 점이 발견되었으나 대체적으로 기본제도에 맞게 제작하려는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즉 익종 효명대왕의 어진의 8류면 7장복과 순종사진에 나타난 12류면 12장복은 대체로 제도에 맞는 것이었다. 고종의 것으로 전해지는 곤

복 역시 9장복 제도에 맞으나, 다만 중단의 색은 규정과 달랐다. 그리고 1920年代에 착용된 英王 및 英王妃의 袞冕관련제구는 대한제국의 규정보다는 朝鮮後期의 곤면 제도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料된다.

中國 明代의 袞冕관련 规定을 유물과 비교해 본 결과, 곤면의 중요 품목인 面류관, 의, 중단 등이 규정과 다르게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곤복은 12장규정에 맞지 않는 18장복이었고, 색도 玄色 규정과는 달리 黃色과 紅色으로 만들어졌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곤면 일습의 품목이 규정과 달라, 壽衣로 곤복을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冕冠이 아닌 翼善冠을 쓰고, 衣이 아닌 裳를 착용하고 있으며 靴이 아닌 鞠를 신고 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볼 때, 복식사 연구에 있어 제도만을 통해 역사적 진실에 접근하는 것이 상당한 한계가 있으므로, 실물이 없는 경우에 다양한 방증 자료를 이용하면서 좀 더 조심스럽게 결론에 접근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史料〉

1. 〈三國遺事〉
2. 『國朝五禮儀序例』
3. 檸代『國葬 및 禮葬都監儀軌』
4. 『國朝喪禮補編』
5. 『大韓禮典』
6. 『明史』
7. 『大明會典』
8. 『純宗實紀』(李覺鍾 撰, 서울, 新民社, 소화2년)

〈論著〉

1. 柳喜卿, 〈한국복식사연구〉, 이화여대출판부, 1975.
2. 劉頌玉, 『朝鮮王朝 宮中儀軌服飾』, 수학사, 1991.
3. 金英淑, 『朝鮮朝末期 王室服飾』, 민족문화문고

간행회.

4. 王宇清, 〈龍袍〉, 國立歷史博物館, 中華民國65년.
5. 沈宗文, 〈中國古代服飾研究〉, 香港, 商務印書館, 1981.
6. 中國社會科學院 考古研究所, 『定陵』, 文物出版社, 北京, 1990.
7. 『文化財大觀』, 重要民俗資料篇
8. 金明淑, ‘朝鮮時代 冕服의 考察’,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9. _____, ‘朝鮮後期 冕服의 變遷’, 『服飾』, 제7호, 1983.
10. _____, ‘儀軌 服玩圖說의 史料的 價值’, 충청전문대학『교수논문집』, 1집, 1985.
11. _____, ‘朝鮮時代 王世子 冕服’, 『服飾』, 제18호 1992.
12. _____, ‘中國 明代 皇帝 袞冕規定의 變遷’, 충청전문대학『교수논문집』, 9집, 1993.
13. _____, ‘韓國과 中國의 袞冕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14. _____, ‘中國 皇帝 袞冕制度의 變遷’, 李春桂 교수 정년퇴임기념논문집, 일신사, 1996.

ABSTRACT

A Study of Korean and Chinese Kon-myun (Ceremonial Royal Robes) as see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egulations and Practice in both Traditions.

Kon-myun was worn by the ancient Chinese and Korean rulers as ceremonial dress during special rituals, such as worshipping heaven and ancestors, marriage, or funerals. Kon-myun consists of two major parts--Myun(the royal headpiece)and Kon-bok(the main bodypiece)--as well as other articles of clothing(skirt, footgear, etc.). There were regulations set in

ancient books describing in detail the make of the Kon-myung, number of ryu(旒)and symbol (章文) to be used, all which applied to each ruler depending on rank and status. This study is aimed at examining the consistency of the Korean and Chinese in following the regulations as seen in relics which have been recovered from the past.

Based on historical findings, it seems that Korean Kon-myung came to Korea from China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about the 6th century). It was also worn in the Koryo (936~1392), and Chosun(1392~1896) Dynasties and the Taehan Empire(1896~1910). In studying Konmyung in Korea, the researcher studied a book from the early Chosun Dynasty, Kukjo-oryeuseorye(國朝五禮儀序例 圖說), and a book from the late Chosun Dynasty, Kukjo-sangrye-bopyun(國朝喪禮補編 圖說), to find the guidelines and rules applying to the Kon-myung tradition. Slight differences were found across time in the supplementary articles of clothing, as seen in Uigwe Pokwan-doseols(儀軌 服玩圖說), explanations and drawings of Kon-myung. The researcher used uigwes of funerals of kings (國葬都監儀軌) of the Chosun Dynasty and observed change over this period of time. However there was a clear consistency : the king's Kon-myung consisted of 9ryu-myung 9chang-bok(9旒冕9章服) while that of the prince consisted of 8ryu-myung 7chang-bok(8旒冕7章服). For the Taehan Empire, the researcher used Tae-han Yae-jun(大韓禮典)

which shows the emperor's Kon-myung to have consisted of 12ryu-myung 12chang-bok(12旒冕12章服).

To study how the regulations were put into practice, relics were uncovered from the periods being studied. A portrait of King Ik-jong(翼宗), remnants from King Ko-jong's(高宗)Kon-bok, and a photograph of Emperor Sun-jong(純宗), all were in close adherence to the regulations outlined in the books.

In China, Kon-myung was worn by emperors from the Han(漢) to the Ching(清) Dynasties. The researcher investigated Kon-myung especially in the Ming(明) Dynasty. The Kon-myung regulations, as read in Tai-ming-hui-chan (大明會典), changed through all four periods.

To study the faithfulness of practice to law, Ding-ling(定陵), the tomb of Emperor Shin-jong(神宗) who ruled during a period of the Ming Dynasty, was unearthed and the remains of the Emperor's Kon-myung were analyzed. The Kon-myung consisted of 12ryu-myung 18 chang-bok(12旒冕18章服), and there were other differences in color, symbols, and wearing method when compared to the regulation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Chinese Kon-myung tradition was not in strict adherence to the regulations established by law books. This is in contrast to the Korean Kon-myung tradition which showed little deviation. Further study is needed to understand why there was this difference in tradition and ritual.